

##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 □ 안내사항

- 시행시기 : 2024. 3. 1. (금) ~
- 내 용

<현행>	<변경>
소형 폐가전 1개 배출 시 <b>수수료 부담</b>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 수거)	소형 폐가전 1개 배출 시에도 <b>무상 수거</b> (폐가전 수수료 면제)

- 대형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종전대로 인터넷이나 콜센터(1559-1769)를 통해 배출 신청
- ※ 문의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5444)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 □ 안내사항

- 충전구역 주차가능 :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P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 전기차, 수소차, 모든 하이브리드차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방해(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등)	10만원
충전구역에 계속(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하는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포함)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또는 문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원

- ※ 문의 : 용인시 기후대기과(☎031-324-3395)

## 단수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 안내사항

- 신청대상 :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 제외
- 내 용
  - 관내 상수도 단수 발생 시 단수 정보를 실시간 문자로 안내
  - 단수 사전알림 또는 사고 발생 시 단수 사실 알림 및 단수 종료시간 등 실시간 안내
- 신청방법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초기화면 → 민원신청 → 문자안내 신청/해지 (URL: <https://www.yongin.go.kr/waterpay>)
- 준비사항 : 수도요금고지서, 거주자 휴대폰(인증필요)

##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점검 지원사업

### □ 안내사항

- 신청기간: 2024. 01. 02. ~ 2024. 11. 30.
- ①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
- ② 신청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③ 구비서류: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광고 참조
-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다세대·연립·단독주택 중
  -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 구조도면, 구조계산서가 관리된 건축물
- 지원내용
  - ① 건축물의 처짐, 균열 등 사용성 검토
  - ② 구조부재의 부식, 부재 강도 등 내구성 검토
  - ③ 지반침하, 기울기 등 검토
- ※ 문의 : 용인시 건축과(☎031-324-3413)

## 여권 간편서비스 안내

용인 르네상스

용인 르네상스



여권 만료됐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여권 온라인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 영문명 변경 희망하는자 등
- 발급안내 **여권 수령안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 여권은 신청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 4~10일 이후 본인 수령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1 정부24 <https://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2 본인인증 후 신청정보 입력
  - 3 여권 사진 파일등록
  - 4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
  - 5 발급자격 및 사진검증
  - 6 수령 희망기관 직접 방문



### 여권용 사진 파일 안내(온라인용)

- 권장 사진규격
 

크기	200kb 이하
형식	JPG
해상도	300dpi

531 픽셀 (pixel)  
← 413 픽셀 (pixel) →
- 접수 불가사진
  - ①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 ② 테두리가 있는 경우
  - ③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⑤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 휴대폰 촬영 사진 불가
  -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파일로 받으면 편리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http://www.passport.go.kr) 참고)